

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소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2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3일  
발 의 자 : 김소영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고병국, 김창원, 김태호,  
김화숙, 박기재, 오한아,  
이광호, 이병도, 이호대,  
한기영, 홍성룡, 황규복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는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가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및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되었음.
- 이후 정보화 기본조례는 4차례의 개정을 통해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로 변경되며, 시 여건에 맞게 교통, 안전, 환경 등 장애인 분야를 포함한 각 부문별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됨.
- 이에 입법경제 측면에서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의 내용 및 정책을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에 일부 반영 및 폐지하여, 스마트도시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5조의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반영함.
- 나.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반영함
- 다.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10조(위탁)를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반영함
- 라. 부칙에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”을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”을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”으로, “전자정부 기본계획”을 “전자정부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조정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1조제2항 등의 업무를”을 “조정 등을”로, “서울특별시”를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

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

4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스마트도시법”이라 한다)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지능정보화 기본법</u>」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, 「<u>국가정보화 기본법</u>」 제6조에 따른 <u>국가정보화 기본계획</u>과 「<u>전자정부법</u>」 제5조에 따른 <u>전자정부 기본계획</u>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「<u>지능정보화 기본법</u>」 제6조에 따른 <u>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</u>----- ----- <u>전자정부기본계획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(생략)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스마트도시책임관)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사업의 조정, 「<u>국가정보화 기본법</u>」 제11조제2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</u> 스마트도시책</p>	<p>제11조(스마트도시책임관) ① ----- ----- <u>조</u> ----- <u>정</u> 등을 ----- ----- ----- 「<u>지능정보화 기본법</u>」 제8</p>

임관(이하 “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 
둔다.

② (생략)

제19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 
(생략)

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 
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  
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20조(정보격차 해소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  
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 
수 있다.

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-----  
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  
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 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6조제  
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  
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  
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 
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  
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5조  
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  
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 
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  
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 
수 있다.

제20조(정보격차 해소) ① (현행과  
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3.·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

4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

5.·6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